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14
----------	-------

발의연월일 : 2026. 6. 22..

발 의 자 : 박덕흠 · 김재섭 · 김예지
김정재 · 구자근 · 김종양
강승규 · 김선교 · 박성민
고동진 · 김장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직기간 합산제도를 두어 퇴직한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본인이 원하는 때에 해당 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합산 신청은 재직기간 중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과 다르게 1996년부터 2009년까지는 재직기간 합산 신청 기간을 종전 직장에서 퇴직한 후 현 직장에 재임용된 날부터 2년이내로 제한하였고, 홍보 부족 등으로 그 기간 내에 합산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한 바 있음.

그런데 2008년 1차 구제 때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퇴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0년 2차 구제 때에는 1996년부터 2005

년까지의 퇴직자 중 종전 직장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함에 따라, 같은 기간 퇴직자 중 종전 직장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권리구제의 공백이 발생하였음.

이에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퇴직한 사람으로서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연금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고 합산을 할 경우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자로서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재직기간 2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만을 지급하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 공단은 합산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라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금

액과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마지막으로 퇴직함으로써 발생한 급여액은 공단에 반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 <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 ①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정년 또 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 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 고 합산을 할 경우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자로서 종전 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합 산 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합산을 인정받 은 경우에는 재직기간 2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 직연금만을 지급하되, 이 법 시 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 터 지급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합산을 인정받</p>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 2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과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공제일시금만을 지급한다.

은 경우 공단은 합산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라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금액과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마지막으로 퇴직함으로써 발생한 급여액은 공단에 반납하지 아니한다.

④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